



팀 장 : 농업5급 박유석 (☎ 5162)  
담당자 : 행정7급 김은주 (☎ 5358)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과 연계]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지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4. 5. 29.(수) 14:00~17:00 / 태안문화원 공연장(2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 정광섭 의원)
- (주 제) 비어업인 수산지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 (참 석) 162명(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 보고서 ||

I. 총 평	.....	1
II. 주요 토론내용	.....	2
① 주제발표(1인)	.....	2
② 지정토론(6인)	.....	7
③ 자유토론	.....	13
III. 토론회 결과 및 성과	.....	16
IV. 후속조치	.....	16

#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별도의 합리적인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충청남도 수산자원에 대한 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의정토론회 결과임.

## I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내 도민, 어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62명이 참여하여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의원 신청으로 마련되었음.
- 수산자원은 어업인의 생존과 직결되고, 보호해야 할 자원으로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함.
- 다만, 마을 어장 및 양식장에 대한 구역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해루질이 가능한 구역을 설정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을 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 Ⅱ 주요 토론 내용

### ① 주제 발표 (1인)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주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법률적 쟁점 검토”

#### □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및 권리

##### ○ 어업인

- 어업인은 우선 어업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물권을 준용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상 전형적인 재산권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업권에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해루질 행위자

- 해루질 행위자의 기본권으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들 수 있음.
- 일반적 행동의 자유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함.
-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 ○ 관광·숙박업자

-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 그리고,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포함함.
- 관광·숙박업자는 해루질이 제한되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 ○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의 규범조화적 해결

-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함.
- 해루질 문제에 있어서는 해루질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관광·숙박업자 영업의 자유와 어업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있어 가능하다면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이 선호되고 있음.
-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임.

## □ 비어업인 포획·채취 조례안의 제정 방향

### ○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있어서의 위임의 범위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시간 및 수량 제한

- 포획·채취의 방법이나 판매금지 등은 벌칙이나 과태료까지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은 낮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핵심은 시간 및 수량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큼.
- 이유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포획·채취 시간이나 포획·채취 수량에 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장비나 방법뿐만 아니라 채취 시간, 수량도 분명히 포획·채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 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채취 시간과 수량을 정하여야 함.

#### □ 해외사례

##### ○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 미국은 주마다 수산물 채취나 낚시에 관한 규정이 상이함.
- 로드아일랜드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패류만 하더라도 굴(oyster), 다랑조개(soft-shell clam), 쇠고둥(whelk), 담치(blue mussel) 등 십수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음.
- 종류별로 채취 시기와 크기, 비어업인 채취의 수량 등을 모두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우리 도의 현실에서 이러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임.

## ○ 일본

- 일본에서는 여가 또는 레저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유어(遊漁)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유어자(遊漁者)라고 함.
- 일본의 「수산자원보호법(水産資源保護法)」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어업법(漁業法)」 제170조 제1항에서 유어규칙(遊漁規則)의 근거를 담고 있을 뿐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의 어업조정규칙(漁業調整規則)에서 어업인이 아닌 유어자(遊漁者)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 독일

- 독일은 연방 국가로 주마다 비어업인의 어로행위나 낚시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는 낚시허가증(Angelschein)을 필요로 하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2005년 어업법(Fischereigesetz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임시낚시면허증(zeitlich befristete Fischereischein)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통상적으로 관광 낚시허가증(Touristenfischereischein)으로, 관광 낚시허가증은 유료로 판매되며 28일 동안 유효함.
- 쉐레스비히-홀슈타인(Urtauberfischerei-schein) 주에서도 휴가 낚시허가증(Urtauberfischerei-schein)을 발급하게 되었으며, 튀링겐주에서도 분기별 낚시허가증(Vierteljahresfischereischein)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일부 주에서 낚시 면허가 없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자격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음.

## □ 결 어

-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방법과 범위가 과거에 비해 구체화 되었음.
- 또한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는 어업인들의 어업권과 숙박·관광업자, 채취자 등의 기본권을 규범조화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핵심은 포획·채취의 시간과 수량이 될 가능성이 큼.
- 시간의 경우 계절별로 일정 시간대를 차별화할 수도 있고 시간의 길이(예를 들어 1일 3시간 등)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수량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중량을 정할 수도 있으며 해외사례와 같이 어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간과 수량을 정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들 간에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 2 지정 토론 (6인)

### ①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충청남도 해양수산국)

- '24년 2월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및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별도의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포획·채취 장소, 시간, 어구, 수량 등)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충남 서해안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의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충남 서해안 갯벌은 청정하고 저조시에 드러나는 간출지 어장이 잘 형성되어 최적의 연안 체험이 가능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해루질 명소이나 지역적으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빠른 유속, 갯골 등의 위험 요소로 해양 고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양 고립사고 신고 중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어, 해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시간 포획·채취 제한이 필요함.
- 비어업인의 마을 어장·양식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따른 어업권 침해를 호소하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음.
  - 공간적 구분이 쉽지 않은 바다에서 오해를 해소하고 어업권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분쟁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마을 어장·양식장 내(안과 밖 구분)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제한이 필요함.

## ② 김남용 수산과장(태안군 산업건설국)

- 태안군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60일간 수산자원관리감시원 30명을 채용하여 어촌계와 합동으로 감시 활동과 홍보, 그리고 연안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음.
  - 해루질객들이 주로 밤에 특히 물 시간대에 따라서 오후 8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활동하고 있음.
  - 반면, 어민들은 대부분 고령화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초저녁 일찍부터 주무시는데, 깊은 밤에 해루질 활동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수산물을 도난당하고 자원은 낭비되고 있음.
  - 특히, 야간에는 주변을 식별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촌계 양식장인지 공유 수면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양식장 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임.
- 따라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정해야 함.
  - 둘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품종에서 전복과 해삼은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길 제안함.
  - 셋째, 1일 1명 기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량은 전복, 해삼을 제외하고 모든 품종은 1kg 이하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맨손어업이나 유어장에서 포획·채취는 적용 제외
  - 넷째, 마을 어장과 양식장 및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여 어업인과 비어업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되어야 함.

### ③ 전중식 해양안전과장(태안해양경찰서)

- 해루질 활동 시 스쿠터 사용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함.
- 스쿠터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기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기구로서, 최근 기술 발달로 소형화되고 편의성이 향상되어 해루질 활동 시 사용이 늘고 있음.

〈스쿠터 성능 현황(시중 30여 종 판매 중)〉

아쿠아 스쿠터	수중프로펠러 W7	수중 추진기
		
* 엔진형 추진기 - 최대속력 : 10km/h - 항속거리 : 약 16km - 수면하 30cm 내 사용	* 배터리형 추진기 - 최대속력 : 6.4km/h - 항속거리 : 약 4km - 배터리용량 : 6AH	* 배터리형 추진기 - 최대속력 : 9km/h - 항속거리 : 약 10km - 배터리용량 : 15AH

- 특히 최근 해루질 활동자들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넓은 해역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수심도 깊어져 마을 양식장까지 들어가서 포획·채취하고 있어서 어업인들과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임.
- 따라서 스쿠터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별도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동력을 이용한 기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제화된 안전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야간 해루질 활동할 때만큼은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박기흥 수산지원팀장(수협 중앙회) :

#####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 방안 마련

###### ○ 문제의 제기

- '17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수중 레저활동을 즐기는 레저객들이 증가하면서, 바다는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재라며 어업인들이 수십 년 동안 관리해 온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선”을 넘고 있음.
- 물론 바다가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마을 어장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자본과 노력을 투여하여 생업으로 삼아온 어업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 ○ 쟁점 사항

- 마을어업권은 해당 어촌계의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재산권임.
-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단속 근거 마련 필요함.

###### ○ 조례 제정 필요성

- 어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 제정임.

###### ○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 방안 마련

- 바다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자본과 노력을 투여하여 생업으로 삼아온 어업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해루질이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촌계와 협의를 통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

⑤ **박현선 회장(충청남도민박협의회) :**

**안전 체험 지역 및 종합 네트워크 센터**

○ 태안군 안면읍의 현황

- 태안은 27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해 수목원, 꽃 축제장, 해안사구, 박물관, 천수만 갯벌 등 다양한 관광지와 각 마을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태안군을 찾는 연 관광객 수는 1,800만여 명으로 숙박객 수는 500만여 명 정도임.

○ 종합 네트워크 센터 건립 제안

- 해루객들이 물때에 맞춰 무작정 바다로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안전한 지역이나 구획에서 해루질할 수 있도록 종합네트워크 센터를 건립해야 함.
- 각종 소셜과 숙박업소 홈페이지 등에 어디를 가면 안전하게 해루질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어업인과의 마찰은 없을 것임.
- 또한 어촌계는 이를 활용하여 소득 사업을 발굴한다면 비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무조건 막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⑥ **최장열 파도리 어촌계장(태안군 소원면)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필요성**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큰 문제는 안전 문제로 우리 어촌계에서만 사망사고가 일 년에 매년 1~3건 정도 발생함.

- 갯벌은 다양한 갯골이 형성되어 있어서 현지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야간에는 아예 접근을 자제하는데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비어업인들이 해루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임.
- 우리 어촌계 업무 구역 내 연안을 따라 전복, 해삼양식장 8건에 50ha를 소유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안은 전복, 해삼양식장으로 개발되어 있음에도 전복, 해삼양식장 경계에서 스킨스쿠버 또는 맨손으로 전복, 해삼 등을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단순히 체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불법 채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세 번째 사례는 선박을 이용한 절도 행위임.
  - 야간을 이용하여 선박을 통해 전복, 해삼양식장에 접근하여 산소통을 맨 다이버를 몰래 내려놓고 선박은 철수한 다음 다이버가 작업이 종료되면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전복, 해삼을 무작위로 채취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바다에서 생산되는 양식물도 논밭에서 기르는 농작물과 똑같이 어업인들이 피땀으로 생산한 제품임. 어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양식제품을 대규모로 씨를 말릴 정도로 절도해 가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마지막으로 야간 해루질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함. 생업과 레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생명 존중을 위해서,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모두 잘살기 위해서 야간 해루질은 반드시 막아야 함.

### ③ 자유토론 (질의·답변)

#### ① 양식장에 대한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당부

##### 질 의

《꽃지어촌계장 나○○》

- 어민 보호를 위해 해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길 당부 하며, 양식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과 함께 수산물에 대한 수집상 문제 해결 필요함.

##### 답 변

《태안해양경찰서 전중식 과장》

-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어느 편에 설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비어업인의 양식장 수산물 포획·채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조례에 담아지면 적극적으로 단속 하겠음.

#### ② 어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조례 제정 당부

##### 질 의

《어촌계연합회장 이○○》

- 레저라는 이름으로 새벽 2시에 미니산소통까지 휴대하고 전문적으로 해루질을 하고 있음. 보초를 세우며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해루질을 하고 있음.
- 또한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민을 경찰에 신고하고 있음.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함.

##### 질 의

《태안군어촌계자율관리협의회장 문○○》

- 레저용 보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길 당부

##### 질 의

《채석포어촌계 최○○》

- 저녁 8시 이후에는 무조건 바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례 제정 당부

### ③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과 전담 부서 요청

#### 질 의

《민동어촌계장 김○○》

- 불법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을 돌며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있음.
- 해경에 신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경찰관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음.
- 불법 해루질 단속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함.

#### 답 변

《태안해양경찰서 전중식 과장》

- 해경에서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야간에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여건상 불법 해루질객들을 찾기란 쉽지 않음.
- 해안 지리 등을 더욱 열심히 파악하여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 ④ 마을 어장 보호구역으로 지정 당부

#### 질 의

《곰섬해삼영어조합법인 조합원 강○○》

- 현재 법상 전라남도 정치망어업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 질 의

《의항2리 어촌계장 이○○》

- 어장 감시조 운영을 했었음. 이유는 너무 무분별하게 해루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마을 어장을 헤집어 놔 치패들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조례를 통해 구역 설정해서 비어업인이 못 들어가게 해야 함.



## ⑤ 관광객과 어민의 상생 방안 필요

### 질 의

《근흥면 부녀회장 김○○》

-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도 지역민이 해야 할 일임. 따라서 어촌계장님들이 태안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관에서는 해루질 제한 구역과 해루질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해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질 의

《태안밝은미래포럼회장 조○○》

-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관에서 어업인, 비어업인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업권을 명확히 하고, 관광객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어업장을 밧줄로 표시하는 등 명확하게 표시하여 비어업인이 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⑥ 민박협회 장비사용 제한

### 질 의

《다항어촌계 양○○》

- 태안군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민박협회에서 해루질 민박을 홍보하면서 장비까지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장비 사용에 제한을 해주길 당부함.

### Ⅲ 토론회 결론 및 성과

#### 결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대두
- 도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 근절 방안 마련 절실
- 관광객들이 마을 어장 및 양식장에서 불법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 공감
- 특히, 야간에 이뤄지는 해루질은 자칫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강력한 규제 절실
- 비어업인이 불법적 해루질을 하지 않도록 어촌계에서는 마을 어장 및 양식장 표시를 명확히 하는 노력 필요
- 관광객이 편히 해루질할 수 있는 공간 지정 필요
- 빠른 조례 제정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분쟁 최소화 노력

#### 성과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한 조례 제정의 공감대 형성
- 마을 어장 및 양식장에 대한 해루질을 제한해야 함을 공감

### Ⅳ 후속조치

- 의정토론회를 통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 의정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의견)이 행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토론회 사진

## 참여자 사진



의정토론회 단체 사진 및 내빈 소개

## 주제발표 및 토론



토론진행(정광섭 의원)



지정토론



주제발표(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 언론보도 현황

## 제목 및 매체

번호	제 목	매 체 명
1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더팩트
2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대전일보
3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충청일보
4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충남일보
5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
6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 주문	뉴스티앤티
7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충청뉴스
8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포인트데일리
9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잡포스트
10	충남도의회, 어업인의 생계와 도민 해양레저 안전 정책 마련해야	국제뉴스
11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제한 정책 마련 나서	브레이크뉴스
12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당진시대
13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SNS타임즈
14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그린뉴스
15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한국언론인연대
16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치매신문

번호	제 목	매 체 명
17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아산데일리
18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충청중심뉴스
19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보도뉴스
20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민족신문
21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문화매일
22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NDN방송
23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금산중앙신문방송
24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세계타임즈
25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뉴스홈
26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어민신문
27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n뉴스
28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어업in수산
29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시사픽
30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경기도민신문
31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뉴스스토리
32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태안미래
33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아산포커스
34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헤드라인충청
35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국회시도의정뉴스

# 도의회, 비어업인 어업 활동 제한 논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 법적 근거 마련  
관광업자와 어업인 합의도출이 주요관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의 요청으로 29일 태안문화원 공연장에서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광섭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진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유재영 충남도 수산자원과장, 김남용 태안군 수산과

장, 전중식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박기홍 수협중앙회 수산지원팀장, 박현선 충청남도민박협의회장, 최장열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김현진 담당관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그러나 시간과 수량을 정함에 있어 어업인과 관광업자 등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관련 의정토론회 진행모습.

충남도의회

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면서 도민이 해양레저를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 마련이 핵심

이라며 "이를 위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와 해경 등을 한자리에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안전한 해양레저 환

경조성을 위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포/이혜슬 기자

#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정광섭 의원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 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9일 태안문화원 공연장에서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광섭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진 충남도의회 입법

정책담당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유재영 충남도 수산자원과장, 김남용 태안군 수산과장, 전중식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박기홍 수협중앙회 수산지원팀장, 박현선 충청남도민박협의회장, 최장열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김현진 담당관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

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그러나 시간과 수량을 정함에 있어 어업인과 관광업자 등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면서 도민이 해양레저를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와 해경 등을 한자리에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컬투데이

2024년 05월 29일 (수)

충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대전타임즈

2024년 05월 29일 (수)

정치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백제뉴스

2024년 05월 29일 (수)

충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뉴스밴드

2024년 05월 29일 (수)

충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내외일보

2024년 05월 29일 (수)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미디어타임즈

2024년 05월 29일 (수)

지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충청메시지

2024년 05월 30일 (목)

충청/광원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뉴스스토리

2024년 05월 29일 (수)

정치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내외뉴스통신

2024년 05월 29일 (수)

지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세계타임즈

2024년 05월 29일 (수)

지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C뉴스041

2024년 05월 29일 (수)

충청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

THE FACT

2024년 05월 29일 (수)

사회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해야"**